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의 윤리적 함의 및 관련 국제 동향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2018-2021)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의 윤리적 함의 및 관련 국제 동향

이 상 육

I. 머리말

유네스코가 2017년 11월 공표한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이하 ‘기후변화 윤리선언’)은 유네스코가 오랜 기간 관련 쟁점에 대해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가집단(ADEG: Ad Hoc experts group)을 만들어 초안을 작성하게 한 후 각국 대표단의 정부간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심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전문가집단이 제안한 초안은 대부분의 경우 그 윤리적 주장의 강도와 제도적 실행의 수준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이후에서 설명하겠지만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수정이 이루어졌다.¹⁾

유네스코는 ADEG가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2017년 6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발표자는 이 정부간 회의에

1) AHEG의 초안은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54/245435M.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2017년 11월 13일 유네스코 본회의를 통과한 선언문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6/002601/260129e.pdf>)과 비교해 보면 회원국 논의 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논의 과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보다는 회원국이 민감하게 판단하는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기후변화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학술적 논점은 이미 ADEG가 작성한 초안에 대부분 잘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간 회의에서는 주로 민감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발표자는 이어지는 절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학술적 논점만이 아니라 회원국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주제도 함께 논의하려 한다. 3절에서는 이번 ‘기후변화 윤리선언’이 갖는 윤리적 함의를 다루고 4절에서는 윤리선언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 전에 이번 윤리선언이 선포되게 된 경과 및 배경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II.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경과 및 배경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시작은 2009년 10월에 개최된 유네스코 과학기술윤리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이하 COMEST) 제35차 총회에서 유네스코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권고안이 채택된 데서 비롯되었다.²⁾ 그 후 회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각국 유엔 대표부 등과의

2)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comest/>



협의를 통해 2010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COMEST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은 2010년 9월에 보고서로 작성되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통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2010년 10월 보고되었다.³⁾

이에 대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COMEST가 이 주제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통해 유네스코 이름으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선언을 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⁴⁾ 이는 당시 진행 중이던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논의 과정에 유네스코가 윤리 원칙 선언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집행위원회 결정문에는 사무총장이 이 새로운 보고서에 UNFCCC를 통해 진행되는 논의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이 그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결과 관련 쟁점을 다룬 후속 보고서가 2011년 5월에 제출되었고, 이 보고서 내용에 기초하여 2011년 11월에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현 단계에서 윤리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OMEST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관련된 윤리 원칙의 기본적 특징을 규정한 문건(Framework of Ethical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을 2011년 10월에 발표한다.⁵⁾ COMEST는 이 문건에서 채택된 적응과 관련된 윤리 원칙과 책임에 대한 생각이 기후변화의 다른 측면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2012년

ethical-principles/previous-work-on-ethical-principles/

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93/189361e.pdf>

4)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99/189993e.pdf#page=20>

5)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4/226470e.pdf#page=27>



10월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논의를 흐름이 변하면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윤리원칙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2013년 5월 COMEST는 이전에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윤리 원칙 구성틀 문건에 담긴 내용의 배경 논의를 자세하게 보충하는 문건을 제8차 정기회의에서 통과시켰다.⁶⁾ 이 문건의 특징은 COMEST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관련하여 발표한 2011년 문건이 택했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정당화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문건에는 해당 윤리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 실행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윤리적 쟁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문건(Ethical Principl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Report of COMEST, 이후 COMEST 기후변화 윤리원칙)이 2015년 COMEST 제9차 정기회의에서 통과되었다.⁷⁾ 이 문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2017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기후변화 윤리선언’과 일치하지만 문건의 성격상 윤리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담고 있다. 특히 윤리 원칙에 대한 논의를 생물학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논의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방식은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에도 일부 반영되었다.

중요한 점은 2015년 11월에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 윤리선언 관련 논의가 COMEST 윤리원칙 문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⁸⁾ 이 논의를 통해 총회는 유네스코 명의로 기후변화 관련 윤리원칙을 ‘선언’하는 문건의 초안 작성을 의결했다. 그리고 초안은 머리말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국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 정부간 회의를 거쳐 조정된 안이 그해 11월 유네

6)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4/226470E.pdf>

7)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45/234529e.pdf>

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33/243325e.pdf>



스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상에서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과 관련된 경과 및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윤리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 의견 제시 및 추진에 있어 COMEST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COMEST의 주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COMEST 기후변화 윤리원칙 문건과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내용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COMEST의 제도적 특징과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국에게 적절한 수준의 행동을 권고하는 (아무리 비강제적이더라도) 유네스코의 제도적 특징 사이의 차이에서 상당 부분 그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윤리적 함의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은 현대 과학기술, 문화, 인종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유네스코의 관심 범위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 유네스코가 그간 발표해 온 여러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유네스코는 ‘관용의 원칙’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고, 1997년에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 갖는 책임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다. 둘 다 ‘윤리적’이라는 수식어가 명시적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윤리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윤리선언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 선언이다.

보다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선언으로는 1997년에 공포된 인간 유



전체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편선언, 2001년에 공표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편선언, 2003년에 공포된 인간 유전 데이터에 대한 국제선언을 들 수 있다. 이들 선언 모두 현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함께 가져온 위험 요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그 바탕이 되는 윤리원칙과 함께 제시한 이번 2011년 선언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윤리선언이 제시한 6가지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Prevention of Harm
2. precautionary Principle
3. Equity and Justice
4. Sustainable Development
5. Solidarity
6. Scientific Knowledge and Integrity in Decision-Making

각 원칙의 내용이나 번역에 있어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이 많기에(적어도 발표자가 보기에) 일단 영어로 제시했다. 이제 각각의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첫 번째 원칙은 흔히 국내 생명윤리 학계에서는 ‘악행 금지’로 번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학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부각시키고(‘악행’), 도덕적 당위성을 강조하는데(‘금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윤리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harm은 반드시 인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결과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모든 행위 주체’에게 관련 윤리 원



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대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위해 금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위해 금지를 위한 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때 단순히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해를 ‘예측, 회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위해 예방’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두 번째 원칙은 회원국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내 사회학계에서는 흔히 ‘예방원리’라고 번역하는 데, 이는 이 원리가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잘못된 번역이다. precaution은 말 그대로 사전 ‘주의’를 의미한다. 이 원칙이 prevention principle이 아님에도 이렇게 ‘예방원리’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대책은 그것이 설사 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도 새로운 위험 요인을 가져올 수 있기에 윤리적으로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윤리선언에서 채택된 ‘사전주의 원칙’의 내용도 정확히 이 점을 고려하여 (그리고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고 파리 협약 이후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1992년 리우회의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기술적 불확실성만을 들어 비용효율적인 위험 대응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는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 비용 효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조차 함축하지 않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윤리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원칙은 ‘사전주의 원칙’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선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셋째 원칙인 ‘형평성과 정의’의 세부 내용은 막연하게 동등한 대우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미치는 ‘취약 집단(vulnerable groups)’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회원국이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취약 집단이 나열의 방식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여성을 ‘취약 집단’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회원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서 정부간 회의 중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이 이루어졌던 주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작은 섬국가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있어 여성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여성을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고자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을 공급하는 역할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물 부족 문제가 더 악화되면 여성의 관련 노동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여성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만드는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여성을 ‘취약 집단’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쟁은 추상적인 윤리 원칙 수준에서도 어딘 것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견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여성 자체는 ‘취약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선언문 3항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언급하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그밖에 2항에서는 COMEST 윤리원칙 문건



에서 강조되었던 세대 간 책임감이 ‘형평성과 정의’의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넷째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발전’ 개념으로 유엔 2030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발 방안에 대한 유엔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도 셋째 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윤리적 고려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물문제,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회원국 정부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윤리원칙 선언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다수 회원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문제를 사례로 포함시키고 싶어 했기에 결국 이 부분은 원안에 가깝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윤리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연상할 수 있는 실질적 사례(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를 나열한 것이 이번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원칙과 여섯째 원칙은 모두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당위를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다른 윤리적 주제에 비해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윤리적 도전이 갖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비교적 추상적 수준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섯째 원칙과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과학지식이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것인지와 관련된 여섯째 원칙의 내용에는 회원국들 사이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숨겨져 있다. 우선 ‘연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완화, 예방 등의 행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원



칙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관련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연대적 대응 자체가 윤리적 당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도 5항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지식과 관련 기술, 역량 개발 등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대다수 기술선진국들은 저개발국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과학지식이나 기술 공여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표명했다. 여기서 ‘지나침’의 기준은 기존에 체결된 파리 협약에서 규정한 자발적 연대의 범위가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파리 협약에서 오랜 기간 협상에 의해 체결된 자발적 연대의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의 제공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유네스코의 이번 선언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적 활동에서 상당 부분 결과했음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과학지식과 관련 기술적 개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생태주의적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긴급하고 광범위한 위기라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성장’에서 강조했듯이 당연히 개인과 사회, 국가 수준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자연에 부담을 덜 주려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반과학적인 태도와 자동적으로 결합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선언문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참된’ 과학지식에 기초한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integrity’ 개념은



단순히 과학지식의 참/거짓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고 연구윤리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research integrity를 연구 ‘진실성’으로 번역하고 연구윤리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도 그에 따라 ‘연구진실성’ 위원회로 설립하였다. 이는 ‘논문조작’이라는 진실성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면서 연구윤리가 소개된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research integrity가 갖는 풍부한 함의, 즉 ‘좋은 연구 수행(good research conduct)’을 목표로 하는 건전한 과학연구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사장되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⁹⁾

그런데 이번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에 포함된 ‘integrity’는 과학지식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과학지식의 생산 과정과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명료함, 투명성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진실성과는 다른 번역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integrity가 ‘진실성’으로 널리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맥락에서 integrity도 진실성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지금 단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번역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이 윤리원칙에 등장하는 ‘의사결정의 진실성’은 단순히 과학지식의 ‘참됨’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여러 관련 가치, 특히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함께 의미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는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 것 같다.

9) 예를 들어,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제시된 연구진실성 개념도 이런 ‘좁은’ 해석에 한정되고 있다.

http://www.cre.or.kr/board/?board=ethics_articles&no=1382499 연구진실성을 포함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이런 식으로 좁게 정의할 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은희, 이상욱 엮음 2011, 『과학 윤리 특강』, 서울: 사이언스북스 참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 윤리 선언’이 단순히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류가 명심해야 할 바람직한 추상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논쟁적일 수도 있는 여러 사안, 특히 ‘취약 집단’이나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실천적인 주제에서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리 원칙’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그 원칙과 연동되는 구체적 ‘행위’의 당위성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분량 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번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실천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제도적 실행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

앞 절에서 이번 선언이 윤리원칙 선언 부분에서 실천적 성격을 부각한 점에 의의를 두었지만, 회원국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정작 제도적 실행의 내용은 원안보다 상당히 축소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단 선언의 뒷부분 제목을 원칙을 ‘실천’한다는 원안의 적극적인 표현 대신 원칙의 ‘적용’이라고 소극적으로 수정한 다음, 정부간 논의 과정에서 거의 모든 문장의 당위성을 한 단계 낮추는 수정이 가해졌다는 점이 그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원안에서는 ‘해야 한다 (should 어떤 경우에는 must)’로 표현되었던 많은 문장이 ‘권고한다 (recommend)’ 정도로 약화되었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의 실천 방안을 논의할 때 ‘해야 한다(must)’라는 강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권고한다(recommend)’라는 약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사안마다 연구의



대상이 될 있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하지만 실제 이런 표현 변화는 각 주제마다 적절한 당위의 수준을 따져보는 치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대 의견을 절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이는 분명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이지만 유네스코가 회원국의 합의를 모아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 원칙에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윤리선언의 실천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8조에서 앞선 윤리원칙 내용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흔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기후변화가 우선적으로는 산업화의 결과이기에 과학기술과의 대척점에서 일종의 ‘환경보호’로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선언을 포함하여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는 빠짐없이 관련 과학기술 혁신이 적응, 완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수행할 핵심적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5항과 6항을 통해 회원국 간의 관련 과학기술 전문성 및 개발 역량의 공유와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위험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과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의 특별함을 언급한 9조와 10조를 지나면 기후변화 관련 교육적 대응을 언급한 11조와 대중 인식을 논의하는 12조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자께서 자세하게 논의하실 것이기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다. 초안에는 기후변화의 실상과 적절한 대응책에 대해 회원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특히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 행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각국의 교육 정책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촉진한다’ 수준의 훨씬 더 약한 표현으로 결정되었는데, 발표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는 본 윤리 선언의 실천적 메시지를 약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



어 보인다.

이후 조항들도 초안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제도적 조치를 언급했었는데 정부간 회의 논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고 결국에는 파리 협약을 비롯한 기존 유엔 결정들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역사적 성취로 평가되는 2015년 파리 협약(Paris Agreement)¹⁰⁾ 체결 이후 열린 이 회의의 결과가 어려운 교섭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파리 협약의 정신이나 내용에 대안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한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간 회의에서 유럽과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파리 협약과의 ‘정합성’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그 결과 선언문의 마지막 18조에 본 선언의 내용이 파리 협약의 재해석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문화시키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윤리원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이 선언문의 의의에 비추어, 제도적 실행과 관련된 조항들은 정부간 논의 과정에서 원래 취지의 상당 부분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추상적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유네스코 논의 절차의 특징 상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국제 영향력이 그대로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회원국들의 의견이 과하게 대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약의 지난한 논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각자의 이해관계와 자국 내의 정치문화적 상황에 따라 상당히 넓은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10)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english_paris_agreement.pdf



해 보인다. 이는 현 단계에서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 선언이 갖는 실천적 함의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보다 비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실천 방안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가능성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전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COMEST 주도하에 이루어져 온 윤리 원칙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 회원국 간의 의견 조정의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른 윤리 선언에 비해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및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으나, 회원국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현실적 파급 효과는 이후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윤리선언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현된 위험에 대해 사전주의적으로 대응을 모색하려는 연대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기후변화가 국제적 쟁점이 되기 전까지 이런 사전주의적 국제 연대의 도덕적 당위성에 공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았다. 이번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선언은 그런 연대가 (많은 어려움과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